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대전지방검찰청**  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선문  
전화 042-470-4040

**보도자료**  
2024. 9. 6.(금)

**제목** **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 
도박사이트까지 제작·광고한 저작권 침해사범 등 8명 기소**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·방식, 수사경위·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(부장검사 박대환)는, 영화·드라마 약 40,000편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'KBUTV 사이트' 운영에 참여한 프로그래머 등 3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고, 직접 수사를 통해 이들의 배후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제작·관리·광고한 총책, 프로그래머,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8명을 9. 3.(화)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※ 「특허범죄중점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기소제도」 활용하여 중앙지법에 기소

● 검찰 수사 결과, 피고인들은 유료인 영화·드라마를 불법으로 무료 제공하는 KBUT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, 46개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총 27억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제작, 서버 임대·관리를 해주고, KBUTV에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도 게시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● 대전지검은 문체부 특사경과 협업하여 미국과의 국제공조, IP추적, 사무실 합동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고, 그 과정에서 대포폰·대포계좌를 사용하면서 도피하던 총책 등 5명을 찾아내 입건하는 한편, 본건 범행의 범죄수익금 총 27억원을 밝혀 해당 수익금 환수를 위해 프로그래머인 피고인 B의 재산(채권) 7,200만원을 추징 보전하였습니다.

●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, 향후에도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하겠습니다.

# I

##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※ 검찰 인지

순번	피의자	범죄사실 요지
1	<b>A</b> (43세, 총책)	공모하여 '22.~'23.경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'KBUTV'에 영화, 드라마 약 40,000여개를 무단 게시하고, 바카라,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46개의 제작·관리 및 배너광고 게시를 하여 <b>저작권법,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</b> * B는 도박사이트 18개, C는 31개 제작 등에 가담
2	<b>B</b> (25세, 프로그래머)	
3	<b>C</b> (35세, 프로그래머)	
4	<b>D</b> (26세, 프로그래머)	'23.경 바카라,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 9개를 제작·관리 하여 <b>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</b>
5	<b>E</b> (41세, 총책 보조)	'24.1.~4.경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비를 수금하여 <b>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</b>
6	<b>F</b> (26세, 프로그래머)	'23.6.~'24.1.경 구글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<b>도박공간개설방조</b>
7	<b>G</b> (24세, 대포폰 제공)	'20.~'23.경 'KBUTV' 관련 대포계좌·대포폰을 대여해주어 <b>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</b>
8	<b>H</b> (24세, 대포폰 제공)	'22.~'23.경 'KBUTV' 관련 대포계좌·대포폰을 대여해주어 <b>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</b>

※ 대전지검 직접 수사로 배후에 숨어 있던 총책 등 피의자 5명(순번 1, 2, 5, 6, 7) 입건

# II

## 수사 경과

- '23. 6.            문체부 특사경(이하 '문체부'), 범죄정보로 수사 착수
  - ※ 미국토안보수사국(HSI) 공조를 통해 자료 취득, IP추적 등 진행
- '24. 2.            대전지검, KBUTV의 저작권법위반 문체부 수사지휘 중 도박개설 정황 등이 확인되어 직접 수사 착수
  - ※ 사법경찰직무법상 문체부의 수사범위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제한되어 도박공간개설 등 도박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

- '24. 4.~5. 대전지검, 문체부와 배너광고비 수금자 E의 주거지 등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 및 공범(C, G, H) 조사를 통해 배후에 숨어 있던 총책 A, 프로그래머 B 등 총 5명(A, B, E, F, G) 입건
  - ※ 대전지검은 A, B, E, F, G, 문체부는 C, D, H를 각 수사하면서 상호 긴밀히 협력
  - ※ A는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'24. 1. 다른 범죄로 검거되었음
- '24. 6. 문체부, C, D, H 대전지검에 송치
- '24. 6.~8. 대전지검,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(총책 A 2회 조사 포함, 범행 인정)를 실시하고, 압수한 휴대폰 34개 및 대포계좌 196개를 분석하여 전체 범죄수익 약 27억 원 특정



- '24. 7. 12. 대전지검, B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
  - ※ B는 범행 인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였고, 검찰은 B의 가담 정도 및 취득 수익이 상당하여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, 법원에서 기각되었음(7. 16.)
- '24. 9. 3. 대전지검, 중앙지법에 8명 각 불구속 구공판(「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의 검사직무대리 기소제도」 활용)
  - ※ D, H는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, D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, H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각 입건하여 기소함

**「특허범죄중점검찰청의 검사직무대리 기소제도」**

- 타 검찰청 이송사건, 특사경 송치사건 중 고도의 전문적 수사를 요하는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으로서 특허범죄중점검찰청 소속검사에 의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토지관할이 없더라도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
- '22년 11건(18명), '23년 10건(17명), '24년 상반기 8건(31명) 검사 직무대리 기소를 하였음

### III

## 수사 결과 및 의의

- 영화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쉽고 불법성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, 이전부터 불법 도박, 스포츠도박, 음란물 등 각종 불법 사이트의 광고수단이 되어 왔습니다.
  - 특히, 최근 청년층의 불법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도박사이트와 전방위적으로 연계하여 ▲사이트 제작, ▲적극적인 이용자 유인과 광고비 수금, ▲검색순위 조작, ▲대포폰·대포통장 제공 등의 방법으로 상호 긴밀한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    - ※ 불법 업로드된 영화, 드라마를 시청하고자 KBUTV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·다수인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광고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고,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등 수령
- 대전지검은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수사역량과 고도의 기술지식, 문체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KBUTV 사이트 운영자들을 모두 적발하여 일망타진하였습니다.
  - 또한 문체부 송치 이후에는 압수한 휴대전화 34개, 대포계좌 196개<sup>1)</sup>를 철저히 분석하여 전체 범죄수익 약 27억원을 특정하였으며, 피고인 B의 채권 약 7,200만원 상당을 추정보전하였습니다.

### IV

## 향후 계획

- 대전지검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, 향후에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문체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☑

1) 검찰 압수 휴대전화 27개, 대포계좌 184개, 문체부 압수 휴대전화 7개, 대포계좌 12개